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국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재정지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비의 배분
등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9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로 제정되
었습니다.
- 동 조례의 목적은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과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으나, 자치구의 재정난으로 인해 인센티브에 과도

하게 집착하는 현상으로 출혈경쟁 심화와 줄세우기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인센티브 사업 평가 등으로 과도한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점이 누적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한 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